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529349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변론 종결2016. 5. 25.

판결 선고2016. 6. 15.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418원 및 그 중 129,559,358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11. 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3.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30,760,12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30,760,1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127,500,000원, 보증기간 2014. 7. 24.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그후 보증기한이 2015. 7. 24.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 B은 위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보증료와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고,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는 2015. 3. 13.경부터 한국외환은행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5. 5. 11.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원고는 2015. 7. 30. 한국외환은행에게 129,559,358원(=채무원금 127,500,000원+2015. 3. 13.부터 2015. 7. 29.까지의 이자 합계 2,059,3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33,180원이고, 법적절차비용은 407,880원이며, 원고가 정하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7. 30.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마. 피고 B은 2015. 3. 17. 입사동기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3. 23.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

바.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5. 3. 17.경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015. 3. 17.경에는 76,543,2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2. 30.경에는 75,885,000원이다[원고는 시가 315,000,000원인 오산시 D아파트 제1306동 제403호(이하 D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15. 3. 6. E과 사이에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하고, 2015.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으므로 책임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 반면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괴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45,000,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127,500,00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18,000,000원,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191,750,000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무 85,000,000원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위 소극재산 합계액 467,250,000원(= 45,000,000원 + 127,500,000원 + 18,000,000원 + 191,750,000원 + 85,000,000원)에 부족하므로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당시 B이 D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아.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5. 3. 24. 괴산신용협동조합에 위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45,000,000원과 이자 124,873원 합계 45,124,873원을 변제하고, 2015. 3. 26. 위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오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괴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30,000,418원(=보증채무이행금액 129,559,358원+추가보증료 33,180원+법적절차비용 407,880원) 및 그 중 보증채무이행금액 129,559,358원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이행일인 2015.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5.

11. 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2015. 7. 30.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3. 17.에는 아직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었고 주채무자인 피고 A가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의 대상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주채무자인 피고 A가 2015. 3. 13.경부터 이자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 및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피고 A가 2015. 5. 11.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원고는 2015. 7. 30. 한국외환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피고 A 및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인 피고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비록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14. 3.부터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 B은 피고 C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해결할 의도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것이며, 피고 C는 매매대금 중 45,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C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는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2. 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75,885,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으로 45,124,873원(=원금 45,000,000원+근저당권 말소 당시 지급한 이자 124,873원)을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30,760,127원(= 75,885,000원-45,124,87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0,760,1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표극창

별지